

# 입찰담합 방지 지침서

조각다각자를 위한  
공정거래

2008



공정거래위원회



## Contents

---

I. 지침서의 목적	3
II. 입찰담합의 개념, 유형 및 제재	4
III. 입찰담합 징후 CHECK LIST	13
IV. 입찰담합 징후를 발견한 경우 대응	17
V. 입찰시 유의할 점	18
VI. 기타	21

# I. 지침서의 목적

●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조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 » 경쟁자들이 담합하는 경우에는 경쟁질서 교란, 낙찰률 상승에 따른 정부예산 과다 지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궁극적으로 국민의 손해로 귀결됨
-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입찰을 직접 주관하는 조달기관의 협조가 있는 경우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됨



## II. 입찰담합의 개념, 유형 및 제재

### 1. 입찰담합이란?

- 입찰담합이란 물품구매 또는 건설공사 등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투찰가격, 낙찰자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

» 입찰담합은 카르텔 유형 중에서도 노골적(naked)인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로 분류되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위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공동행위 심사기준 III. 1. 가. (1)>

- 입찰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해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임<법 제19조 ① 8호>

## 2. 입찰담합의 유형

- 아래 기재한 사항은 예시적인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찰담합에 해당할 수 있음

입찰가격담합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수주물량 등의 결정

경영간섭 등

## 입찰가격담합

●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을 결정·유지·변경** 하는 행위

.....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 하는 행위
-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 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 »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입찰대상공사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영업활동 행위는 허용됨

##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그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 .....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 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는 행위
- »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 하는 행위
-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수주하는 경우는 허용됨

##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의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

-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
-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 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 3. 제재

#### 시정조치

● 당해행위의 중지, 범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 단체가 범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범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법 제21조, 제27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범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발주 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과징금

● 입찰담합행위 : 담합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 범위 내 <법 제22조>

.....

»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함 <법 제9조>

● 사업자단체의 행위 : 사업자단체는 **5억원**, 참가사업자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 범위 내 <법 제28조>

## ※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법 제22조의2>

.....

»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자진신고자로서, 관련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성실하게 협조할 것,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다른 사업자에게 공동행위 참여 또는 참여중단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을 요함<법 시행령 제35조>

## 형벌

- 입찰담합 행위를 한 자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징역과 벌금은 병과(並科) 가능)<법 제66조>

.....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

-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법 제56조, 민법 제750조>

.....

»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제재는 아니고 민사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찰담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임

## Ⅲ. 입찰담합 징후 CHECK LIST

### 1. 입찰가격 관련

- ✓ 동일 물자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장기간 동안 낙찰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 ✓ 비용인상 유발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인상된 경우
- ✓ 전통적으로 할인가격이 존재했던 시장에서 할인가격이 사라진 경우
- ✓ 근거리에서 제품을 싣는 입찰자들이 원거리에서 싣는 입찰자들과 같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 가격담합이 없다면 원거리 판매자들은 운송비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
- ✓ 지역 경쟁자들이 원거리보다 지역 내 운송료를 더 높게 입찰한 경우
- ✓ 새로운 입찰자 또는 가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나타날 때마다 다른 기업들의 입찰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
- ✓ 입찰시 제출한 가격과 입찰자들이 공개한 가격이 불일치하는 경우
- ✓ 입찰가가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 ✓ 재입찰에서 원래 입찰과 동일한 입찰순위가 나오는 경우
- ✓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같은 품목에 대해 다른 가격을 제시한 경우
- ✓ 둘 이상의 업체가 한 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입찰가를 제시한 경우
- ✓ 특정지역 연고의 입찰자들이 다른 지역의 발주자에게 보다 같은 지역의 발주자에게 높은 입찰가로 응찰하는 경우

## 2. 낙찰결과 관련

- ✓ 특정 업체가 특정 조달사업이나 특정지역에서 항상 낙찰을 받는 경우
- ✓ 낙찰가격과 다른 입찰가격 간의 격차가 이유없이 큰 경우
- ✓ 일부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낙찰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 동일한 참가업체 군이 매번 입찰에 참가하여 순차적으로 낙찰을 받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
- ✓ 특정 업체들이 반복해서 함께 입찰에 참가하거나, 특정업체들끼리는 절대로 함께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 ✓ 일부 업체들이 예정가격이나 자신들이 종전에 제시했던 가격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 특정 물품에 대한 비용이 종전의 소요비용이나 유사품목의 비용에 비해 크게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달에 대한 입찰가격을 상당히 높게 제시하는 경우
- ✓ 낙찰업체가 동일한 입찰에 높은 가격을 제출한 회사들과 반복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낙찰업체가 입찰참가서류는 가져갔지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 또는 입찰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각 입찰자들이 몇 년에 걸쳐 전체사업의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 서로 다른 업체들의 무리가 서로 다른 지역에 배타적으로 몰려있는 경우

### 3. 입찰자들의 행태 관련

- ✓ 서로 다른 입찰자들이 제출한 입찰서류들이 서로 유사한 경우
  - 동일한 계산상·표기상 오류 등이 있는 경우
- ✓ 서류제출 직전에 입찰가격을 수정한 것으로 추측되는 징표들이 서류에서 발견되는 경우
- ✓ 입찰자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정도로 가격을 빈번하게 수정하는 경우
- ✓ 특정 입찰자가 자신과 다른 경쟁자의 입찰 관련서류들을 한꺼번에 요청하여 일괄 제출하는 경우
- ✓ 개별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또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입찰 하는 경우
- ✓ 경쟁 사업자들이 정기적인 회합을 갖거나, 입찰서류 제출 마감 직전에 발주기관 근처에서 모임을 가진 경우
- ✓ 경쟁 사업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조달기관 직원과 입찰서류에 대해 논의·검토하는 경우
- ✓ 경쟁자들이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 업체가 당해 조달계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에 있음에도 입찰참가를 하는 경우

## 4. 진술과 관련

공급회사 마케팅 담당자나 판매촉진물 등에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있는 경우

- ✓ 협회가격표, 산업가격표, 산업제시 가격, 전산업적 또는 전시장적 가격에 대한 언급
- ✓ 산업 또는 산업 선도자의 가격 또는 조건을 따랐다는 진술
- ✓ 산업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을 따랐다는 등 산업 자율규제 등에 대한 언급
- ✓ 특정기업이 어떤 이유에서건 경쟁자들을 만나왔다는 언급
- ✓ 공급자들이 원하거나, 경쟁자들이 같은 것을 원하거나, 모두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정당화하는 것
- ✓ 특정 회사는 그 지역에서는 팔지 않는다거나 특정 회사만 그 지역에서 팔거나 또는 그 사업을 취급한다는 언급
- ✓ 특정 업체가 어떤 계약을 따낼 “순서”라는 언급
- ✓ 입찰자가 다른 공급업체들을 도와서 입찰을 한다는 등의 언급
- ✓ 경쟁업체들이 입찰에 대해 논의하였다거나 입찰에 대한 거래나 양해가 있다는 언급
- ✓ 이번 입찰이 특정 경쟁자를 위한 것이라거나, 자신은 의례적으로 입찰한 것이라거나, 입찰자들 간에 가격에 관한 논의를 한 듯한 언급



## IV. 입찰담합 징후를 발견한 경우 대응

### ●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였을 경우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

.....

» 입찰분석결과, 경쟁자의 신고, 전(前)직원 등 관계자의 제보 등을 통해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였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하여 다음 사항에 관해 의사를 교환할 것

- (a)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지, (b) 정식 조사가 착수되어야 하는지, (c) 관련행위가 경쟁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등

» 아울러 잠재적인 입찰담합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조달기관의 담당 직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 간의 비공식적 접촉이 필요

### ● 철저한 보안유지

.....

» 카르텔은 은밀히 행해지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움

- 그런데 사전에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경우 관련 자료를 은폐·폐기하여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담합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입찰담합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입찰참가자들도 그 신고사실을 절대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필요 있음

## V. 입찰시 유의할 점

### ● 잠재적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넓힐 것

- »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수가 많을수록 담합이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고, 결국 담합의 발생이 줄어듦

### ●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컨소시엄 공고를 피할 것

- » 입찰공고시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당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설사들 간의 컨소시엄은 가급적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단독으로도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경쟁으로 인해 낙찰을 받지 못하거나, 저가로 낙찰받는 것을 우려하여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음

### ● 장래 하도급계약자와 하도급계약 가격에 관한 정보요구

-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경쟁을 피하고, 낙찰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로 하고, 일부는 낙찰받은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음
  -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대등한 업체들간의 하도급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 있음

### ● 입찰담합관련 서약서 징구하고 계약서에 첨부할 것

- .....
- » 입찰서류를 제출받을 때 입찰자들간의 의사연락 내지 입찰담합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입찰담합 사실 발견시 당해 입찰 무효, 계약해제·해지, 향후 입찰참가자격제한,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계약서에 첨부할 것<별지서식 1호 참고>

### ● 가능한 한 대체상품을 허용

- .....
- » 정부 시방서(示方書)의 내용이 오직 하나 또는 제한된 수의 잠재적 입찰자들만 충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로 입찰참가자가 제한되어 담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
    - 따라서 특정한 상품보다는 특정한 성능에 초점을 맞춰 대체상품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 있음

### ● 구매계약을 통합할 것

- .....
- » 구매계약을 통합하면 계약 성사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담합에 참가하였더라도 합의를 깨려는 유인이 커짐
    - 작은 계약을 10번 하는 것 보다 이를 합쳐서 큰 계약을 1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 시장가격을 파악할 것

- » 공급자 군(群)에 대한 정보 및 시장가격 사전 숙지
- » 타 지역에서의 시장가격 파악

● 입찰참가자 명단을 비공개할 것

- » 입찰참가자의 명단을 공개하면 경쟁자들이 누구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비공개할 것

● 예정가격을 비공개할 것

- » 예정가격을 공개하면 입찰자들이 이 가격을 입찰가의 하한선으로 사용할 유인이 크므로 공개하지 말 것

● 예측가능한 상황을 피할 것

- » 다음에 어떤 입찰이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합을 하기에 용이하므로 예측가능한 상황을 피할 필요 있음



## VI. 기타

### 1. 자료 보관, 정리 및 분석

#### ● 조달입찰 자료를 보관(최소 5년간)

- »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이름, 주소, 제출한 서류,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입찰서류를 제출한 직원의 이름, 건설업체들 혹은 임원들 사이의 회합, 제휴정보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최소한 5년 이상 보관할 필요 있음
- » 특히 시장분할(allocation)이나 돌려먹기(rotation)와 같은 패턴이 있을 경우 과거의 입찰 기록이 없이 한번의 계약만으로 알아내기는 힘들
  - 자료수집 양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들을 편집하고, 가능하다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좋음

#### ● 의심스런 산업에서는 그 동안의 입찰내력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 » 주요 업체들과 그 업체들이 5년간 따낸 계약의 수, 계약금액, 전체 계약금액, 각 업체들이 따낸 계약금액의 비율, 업체들의 순위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경쟁메트릭스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

## 2. 조달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포상

### ●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입찰담합관련 교육 실시

- » 조달기관 직원들에 대하여 입찰담합 방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입찰담합의 개념, 징후, 탐지한 경우 처리방법을 숙지시킬 필요 있음

### ● 입찰담합 적발 및 제재에 기여한 직원 포상

- » 조달기관은 입찰담합을 탐지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쟁 당국의 처벌에 기여한 직원들을 포상

## 3. 담합한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담합으로 인해 조달기관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고, 아울러 담합한 업체와 잠재적 담합 업체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필요 있음

※ 방위사업청은 '98-'00년 동안 군납유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 투찰물량 등을 담합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810억원 배상판결을 받음(서울중앙지법 '07.1.23.선고 2001가합10682)

# 서 약 서

년 월 일

○○○○長(예, 조달청장) 귀하

회 사 명	(인)
대표자명	(인)
담당자명	(인)

이번 ○○○○공사의 입찰에 관해, 경쟁자들과 (a)가격, (b)가격산정 방법, 요소, 공식, (c)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지 여부 (d)낙찰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e)수주물량, (f)물품 또는 서비스의 질, 사양 등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제시하는 입찰의 조건들에 관해 입찰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경쟁자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지, 검찰 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없습니다.

만약, 담합을 제의받거나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귀 기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별지2호(예시)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장 귀하

○○○○장

담합정보 등 관계자료 송부

○○○○(예: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소관의 ○○○○공사의  
입찰과 관련된 담합정보에 관한 자료를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별첨 : 담합정보보고서(사본)



## 담합정보보고서

년 월 일

정보수령일시	년 월 일( ) 시 분
공사명	
공사발주기관	
공사주관과	
입찰(예정)일	년 월 일( ) 시 분
정보제공자	직책 : 성명 :
정보수령자	소속 : 직책 및 성명 :
정보수단	•전화 •FAX •우편 •전자우편(E-MAIL) •서면 •면담 •보도 •기타
정보내용	

별지4호(예시)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장 귀하

○○○○장

담합정보 등에 관한 자료 추가 송부

○년○월○일에 송부했던 담합정보 등에 대해, 그 후의 조사결과를  
별첨과 같이 추가로 송부합니다.

- 별첨 : 1. 서약서  
2. 입찰조서  
3. 그 외 관련 자료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입찰담합징후를 인지한 경우**  
다음 기재한 곳으로 연락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

- 과 장 : 02) 2023-4436
  - 총괄서기관 : 02) 2023-4446
  - 총괄사무관 : 02) 2023-4437
  - 이 메 일 : cartel@ftc.go.kr
  - F A X : 02) 2023-4444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4동(반포로 648)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